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하여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무역안보 수사를 위하여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2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5명(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3명, 9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덤핑거래 대응을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1명, 6급 3명, 7급 9명, 8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국경관리 수행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청 통관국, 세관 통관부서 일부, 관세인재개발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전문경력관 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무역심사팀의 존속기한을 종료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6급 4명)은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의 일부 직렬을 관련 업무 분야로 조정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에 따른 부처 명의 변경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00. ~ 12. 00.) 결과, 특기

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통관물류정책과·관세국경감시과·수출입안전검사과·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지원과를 두되, 통관물류정책과장·수출입안전검사과장·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지원과장”을 “통관기획과·관세국경감시과·통관검사과·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과를 두되, 통관기획과장·통관검사과장·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관물류정책과장”을 “통관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을 “통관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세산업지원과장”을 “보세산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정무역심사팀을 두되, 심사정책과장·세원심사과장 및 기업심사과장”을 “공정무역심사과를 두되, 심사정책과장·세원심사과장·기업심사과장 및 공정무역심사과장”으로, “보하고,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무역심사팀장”을 “공정무역심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덤핑거래”를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중유통 수입물품과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조사

13.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제11조제3항 중 “수출입물류과·통관정보과·물류감시1과·물류감시2과·통관검사1과·통관검사2과·통관검사3과·장비관리과·전산정보관리과·심사정보”를 “수출입물류과·통관정보과·물류감시1과·물류감시2과·수입통관1과·수입통관2과·수출통관과·장비관리과·전산정보관리과·심사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출입물류과·통관검사1과·통관검사2”를 “수출입물류과·수입통관과·수출통관”으로, “5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관총괄과·통관검사1과·통관검사2과·통관검사3과·통관검사4과·통관검사5과를”을 “통관총괄과·수입통관1과·수입통관2과·수입통관3과·수출통관과·화물검사과를”로, “신항통관감시과·신항물류감시과·신항통관검사1과·신항통관검사2과 및 신항통관검사3과를”을 “신항통관감시과·신항물류감시과·신항수입통관1과·신항수입

통관2과 및 신항수출통관과를”로, “외환조사”를 “외환조사과,
 무역안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출입물류과·통관
 정보과·물류감시1과·물류감시2과·통관검사1과·통관검사2
 과·통관검사3과·통관검사4과·통관검사5과·신항통관과·
 여행자통관”을 “수출입물류과·통관정보과·물류감시1과·물
 류감시2과·수입통관1과·수입통관2과·수출통관과·화물검
 사과·특송통관과·신항통관과·여행자통관”으로, “3명 및”을
 “3명, 무역안보조사과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수출입
 물류과장·통관검사1과장·이사화물과장·심사총괄1과장·체
 납관리과장·심사총괄2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조사총
 괄과장·특수조사과장·외환조사총괄과장”을 “수출입물류과장
 ·수입통관과장·이사화물과장·심사총괄1과장·체납관리과
 장·심사총괄2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조사총괄과장·
 특수조사과장·외환조사총괄과장”으로, “통관총괄과장·통관
 검사1과장·수출입물류과장·물류감시과장·장비관리과장·
 신항통관감시과장·신항통관검사1과장·심사총괄과장·자유
 무역협정검증과장·분석실장·조사총괄과장”을 “통관총괄과장
 ·수입통관1과장·수출입물류과장·물류감시과장·장비관리
 과장·신항통관감시과장·신항수입통관1과장·심사총괄과장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분석실장·조사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관검사1과장”을 “수입통관

1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출입신고”를 “수입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입물품”을 “수입물품”으로, “수출입통관요건”을 “수입통관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반출입”을 “반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통관검사2과장·통관검사3과장·통관검사4과장 및 통관검사5과장”을 “수입통관2과장 및 수입통관3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3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항 및 제25항을 각각 제27항 및 제2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를 각각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제12조제26항을 제3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제15항, 제20항 및 제2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검사
2.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⑮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1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⑳ 심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

항을 분장한다.

②⑥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법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삭제
3. 삭제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조사 및 화물의 조사
7. 관세법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
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9.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
10.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11.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조정
12. 금수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13.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
박이 입항·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
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 총
기류·폭발물의 밀수단속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

사업무

1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
칙수사업무

1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7.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

제12조제12항(중전의 제10항) 및 제16항(중전의 제14항) 중 “제
9항”을 각각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중전의 제15
항) 중 “신항통관검사1과장·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
사3과장은 제6항”을 “신항수출통관과장은 제8항”으로 하며, 같
은 조 제19항(중전의 제16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심사와 정보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7항 중 “심사관은 제16항”을 “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수입통관2과장은 제6항”으로,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분장한다”를 “각각 분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3항(중전의

제20항) 중 “제19항제8호”를 “제22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5항(중전의 제22항) 중 “제21항”을 “제2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총괄과장”을 “수출통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7항(중전의 제24항) 중 “제23항 및 제25항”을 “제26항 및 제2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0항(중전의 제26항) 제1호 중 “제2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 제13호 · 제15호”를 “제26항제1호 · 제12호 · 제13호 ·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3항 및 제25항”을 “제26항 · 제28항 및 제29항”으로 한다.

1. 수출신고의 수리
2.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 · 감정 및 수출통관요건의 확인
3. 물품의 반송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7. 남북교역물품의 반출 관리

㉔ 무역안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3.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4. 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 사항

제13조제5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제9항제3호 · 제18호 · 제19호”를 “제11항제3호 · 제18호 · 제19호”로, “제11항”을 “제13항”으로, “제12항제1호 · 제3호”를 “제14항제1호 ·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과장”을 “수입통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제13조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8항제1호”를 “제10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총괄2과장”을 “심사총괄1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를 각각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제12조

제19항제1호”를 “제12조제2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2항) 중 “제12조제19항제12호”를 “제12조제22항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3항) 중 “제12조제20항”을 “제12조제2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4항) 중 “제12조제21항”을 “제12조제24항”으로 한다.

1.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항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⑩ 심사총괄2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제17호·제17호의2,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2. 삭 제

⑪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사범, 조직범죄 및 제12조 제2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심사 및 수사
2.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심사 및 수사
3.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제13조제16항(중전의 제15항) 중 “제12조제18항”을 “제12조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중전의 제16항) 중 “제12조제23항”을 “제12조제2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중전의 제17항) 및 같은 조 제20항(중전의 제19항) 제4호 중 “제16항”을 각각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중전의 제20항) 중 “제12조제26항”을 “제12조제3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항(중전의 제21항) 제1호 중 “제12조제25항제1호”를 “제12조제2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26항제2호”를 “제12조제3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3항(중전의 제22항) 중 “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항(중전의 제23항) 제1호 중 “제12조제25항제2호”를 “제12조제28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5항(중전의 제24항) 중 “제23항”을 “제24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를 “제12조제1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및 제21항을 각각 제22항 및 제2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제9항, 제20항 및 제2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제2호 중 “제12조제12항”을 “제12조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0항) 중 “제16항·제18항 및 제19항”을 “제19항·제21항 및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1항) 중 “제12조 제21항”을 “제12조제24항”으로 한다.

⑦ 수입통관1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9항 제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제28항부터 제30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건의 운용 및 관리

⑪ 조사관은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제14항(중전의 제12항) 중 “제12조제11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중전의 제16항) 중 “제15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중전의 제17항) 중 “제15항제1호”를 “제17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2항(중전의

제20항) 제3호 중 “제12조제23항제4호”를 “제12조제26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3항(종전의 제21항) 중 “제20항”을 “제22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제9항”을 “제12조제11항”으로, “제12항제2호”를 “제14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제19항 및 제2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제10항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8항제2호”를 “제10항제2호”로 한다.

⑦ 수입통관1과장 및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⑨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각각 분장한다.

⑮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제12조제11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

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중전의 제11항) 중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항”을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13항) 중 “제12조제18항”을 “제12조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심사정보과장”을 “심사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8항(중전의 제15항) 중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을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중전의 제16항) 중 “제12조제23항”을 “제12조제26항”으로, “제25항”을 “제2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중전의 제17항) 중 “제16항”을 “제1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중전의 제18항) 중 “제12조제26항”을 “제12조제30항”으로 한다.

㉑ 무역안보조사과장은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12조제5항 · 제6항 · 제8항”을 “제12조제5항 · 제6항 · 제8항 · 제9항 · 제10항”으로, “제16항제18호”를 “제19항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16항제1호”를 “제12조제19항제1호”로, “제20호”를 “제21호”로, “제19항 및 제21항”을 “제22항 및 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제16항제1호”를 “제12조제19항제1호”로, “제18항”을 “제21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2조제23항·제25항 및 제26항”을 “제12조제26항·제28항부터 제3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2조제9항·제11항”을 “제12조제11항·제13항”으로, “제12항제1호·제3호”를 “제14항제1호·제3호”로 한다.

제16조의2제4항 중 “제12조제5항·제6항·제8항”을 “제12조제5항·제6항·제8항·제9항·제10항”으로, “제16항제18호”를 “제19항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16항 각 호(제18호)”를 “제12조제19항 각 호(제18호, 제20호)”로, “제18항”을 “제21항”으로, “제19항”을 “제22항”으로, “제21항”을 “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제23항·제25항 및 제26항”을 “제12조제26항·제28항부터 제3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2조제9항”을 “제12조제11항”으로, “제11항”을 “제13항”으로, “제12항제1호·제3호”를 “제14항제1호·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항 및 제8항 각 호”로, “제8항제1호”를 “제10항제1호”로, “제16항제18호”를 “제19항제18호”로, “제18항제1호”를 “제2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11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한다.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가

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제6항”을 “제6항·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15항”을 “제14조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8항제1호”를 “제12조제10항제1호”로, “제9항”을 “제11항”으로,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16항제1호”를 “제12조제19항제1호”로, “제18항제1호”를 “제21항제1호”로, “제19항제1호”를 “제22항제1호”로, “제21항”을 “제24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6항 중 “제12조제23항제1호”를 “제12조제26항제1호”로, “제18호까지”를 “제17호까지”로, “제25항제1호”를 “제28항제1호”로, “제10호까지의”를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2조제11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항 및 제8항 각 호”로, “제8항제1호”를 “제10항제1호”로, “제16항제18호”

를 “제19항제18호”로, “제18항제1호”를 “제2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 제9항제1호”를 “제12조제11항제1호”로, “제11항”을 “제13항”으로, “제12항제1호·제3호”를 “제14항제1호·제3호”로 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같은 조 제11항제14호·제15호,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항제12호·제13호”를 “제9항 각 호”로, “제9항제1호”를 “제11항제1호”로, “제11항”을 “제13항”으로, “제12항제1호”를 “제14항제1호”로 한다.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14조제15항”을 “제14조제17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제14조제15항”을 “제14조제17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항 및 제8항 각 호”로, “제8항제1호”를 “제10항제1호”로, “제16항제18호”를 “제19항제18호”로, “제18항제1호”를 “제2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

제11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 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 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장의2의 제목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2조의3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8명”을 “9명”으로, “6명)”을 “4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급”을 “6급 1명)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관세주사보 1명)”을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7명(관세주사 6명, 관세주사보)”를 “3명(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학예연구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6조 중 “관세청”을 “관세청과 그”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60”을 “363”으로, 일반직 계 “359”를 “362”로, 서기관 “12”를 “13”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를 “11”로, 행정사무관 “46”을 “47”로, 관세주사 “80”을 “81”로 하며, 관세주사 또는 공업주사 1 다음에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를 신설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68”을 “372”로, 일반직 계 “367”을 “371”로, 서기관 “12”를 “13”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3”을 “12”로, 행정사무관 “47”을 “48”로, 관세주사 “95”를 “94”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 다음에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2”를 신설하고,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2 다음에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를 신설하며, 방송통신주사보 8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를 신설한다.

별표 6의2 공업주사 12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을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1”를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67”을 각각 “4,902”로, 행정사무관 “124”를 “127”로, 관세주사 “777”을 “784”로, 관세주사보 “926”을 “943”으로, 관세서기 “1,053”을 “1,060”으로, 관세서기보 “741”을 “742”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74”를 각각 “4,905”로, 행정사무관 “139”를 “142”로, 관세주사 “858”을 “859”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다음에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신설, 관세주사보 “1,024”를 “1,040”으로, 관세서기 “955”를 “962”로, 관세서기보 “651”을 “652”로 하고, 기록연구사 6 다음에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한다.

별표 8의3의 제목 중 “관세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 (제34조 제7항 전단 관련)”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 (제34조제7항 전단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5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공정무역심사팀”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무역심사팀의 소관사무는 심사정책과에서”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08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별표 4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2

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는 “별표 4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로 하고,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4의2 정원 1명(관세주사 1명) 및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 및 중앙관세분석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09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3명)”을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로, 제2조제2항 중 “별표 8의2의 정원 7명(관세주사 6명 및 관세주사보 1명)”을 “별표 8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및 학예연구사 1명)”로 하고, 제4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4의2 정원 1명(관세주사 1명)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 및 세관관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
주사보 1명)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2. 3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6조 관련)

1. 관세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심사국 공정무역심사과	2명 (5급 1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관세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3과	10명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부산세관 무역안보조사과	10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 9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4) 인천세관 무역안보조사과	5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5)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6명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특송물품 현장검사 (세관관서)	5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2) 특송물품 현장검사 (세관관서)	11명 (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특송물품 현장검사 (세관관서)	13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4) 특송물품 현장검사 (세관관서)	18명 (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통관국) ① (생략)	제4조(통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관국에 <u>통관물류정책과·관세국경감시과·수출입안전검사와·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지원과</u> 를 두되, 통관물류정책과장·수출입안전검사과장·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u>통관기획과·관세국경감시과·통관검사와·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과</u> 를 두되, 통관기획과장·통관검사와장·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과장-----
③ <u>통관물류정책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15. (생략)	-----
④ (생략)	-----
⑤ <u>수출입안전검사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u>통관기획과장</u> -----
1. ~ 10. (생략)	-----.
⑥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⑦ <u>보세산업지원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⑤ <u>통관검사와장</u> -----
제5조(심사국) ① (생략)	-----.
	1. ~ 10.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u>보세산업과장</u> -----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국에 심사정책과 · 세원
심사과 · 기업심사과 및 공정무
역심사팀을 두되, 심사정책과장
· 세원심사과장 및 기업심사과
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서
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
다.

③ ~ ⑤ (생략)

⑥ 공정무역심사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

3. ~ 9. (생략)

10. 덤핑거래 심사 제도의 기획
· 운영

11. · 12. (생략)

<신설>

제11조(세관) ① · ② (생략)

③ 인천공항세관에 세관운영과
· 감사담당관 및 협업검사센터
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

② -----
----- 공정무역
심사과를 두되, 심사정책과장 ·
세원심사과장 · 기업심사과장
및 공정무역심사과장-----
보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정무역심사과장-----
-----.

1. (현행과 같음)

2. 시중유통 수입물품과 수입원
료 사용 국내생산물품의 원산
지표시 조사

3. ~ 9. (현행과 같음)

10.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

11. · 12. (현행과 같음)

13.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정보
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제11조(세관)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

----- 수출입물

물류과 · 통관정보과 · 물류감시
1과 · 물류감시2과 · 통관검사1
과 · 통관검사2과 · 통관검사3과
· 장비관리과 · 전산정보관리과
· 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여
행자통관1국에 여행자통관1과,
여행자통관검사관 7명 및 여행
자정보분석과를, 여행자통관2국
에 여행자통관2과 및 여행자통
관검사관 7명을, 특송우편통관
국에 특송우편총괄과 · 특송통
관1과 · 특송통관2과 · 특송통관
3과 · 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
과를,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
사관 2명, 마약조사1과, 마약조
사2과 및 마약조사3과를 둔다.

④ 서울세관에 세관운영과·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수출입물류과·통관검사1과·통관검사2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1국에 심사총괄1과, 심사관 3명, 심사정보과, 환급심사과, 체납관리과 및 분석실을, 심사2국에 심사총괄2과, 심사관 5명, 자유무역협정검증1

다.

⑥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통관정보과·물류감시1과·물류감시2과·통관검사1과·통관검사2과·통관검사3과·통관검사4과·통관검사5과·신항통관과·여행자통관과 및 여행자통관검사관을,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심사관 3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3명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⑦ ~ ⑫ (생략)

⑬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관운영과장·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및 협업검사센터장, 서울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통관검사1과장·이사화물과장·심사총괄1과장·체납관리과장·심사총괄2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조사총괄과장·특수조사과장

--.

⑥ -----

----- 수출입물류과·통관정보과·물류감시1과·물류감시2과·수입통관1과·수입통관2과·수출통관과·화물검사과·특송통관과·신항통관과·여행자통관-----

--- 3명, 무역안보조사과 및 ---
--.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

수출입물류과장·수입통관과장·이사화물과장·심사총괄1과장·체납관리과장·심사총괄2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조사총괄과장·특수조사과장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⑤ (생략)

⑥ 통관검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신고의 수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감정 및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3. 물품의 반송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7.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
8. ~ 11. (생략)
12.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 화물의 검사
13.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⑦ 통관검사2과장·통관검사3과장·통관검사4과장 및 통관검사5과장은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 설>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수입통관1과장-----
-----.

1. 수입신고-----
2. 수입물품-----
--- 수입통관요건-----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7. ----- 반입 -----
8.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⑦ 수입통관2과장 및 수입통관3과장-----

-----.

⑨ 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⑨ (생략)

⑩ 물류감시관은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⑪ · ⑫ (생략)

<신설>

⑬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⑭ 신항물류감시과장은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⑮ 신항통관검사1과장 · 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사3과장은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

1.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검사

2.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⑩ · ⑪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⑫ ----- 제11항 -----
-----.

⑬ · ⑭ (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

⑮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1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⑯ ----- 제11항 -----
-----.

⑰ 신항수출통관과장은 제8항

각 분장한다.

⑩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신설>

20. (생략)

<신설>

⑪ 심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⑫ ~ ⑭ (생략)

⑮ 체납관리과장은 제19항제8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⑯ 분석관은 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

⑰ -----
-----.

1. ~ 19. (현행과 같음)

20.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심사
와 정보에 관한 사항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⑱ 심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⑲ 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
수입통관2과장은 제6항 -----

--- 관세청장-----

-- 각각 분장한다.

⑳ ~ ㉒ (현행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와 같음)

㉓ ----- 제22항제8호

-----.

㉔ ----- 제24항 -----

-----.

㉕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법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삭제

3. 삭제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
칙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의 관리·조사 및 화물의 조
사

7. 관세법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9.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

10.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11.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조정

12. 금수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
무

13.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
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공항
·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
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하
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
총기류·폭발물의 밀수단속

②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법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1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1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7.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수출통관과장-----
-----.

1. 수출신고의 수리
2.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감정 및 수출통관요건의 확인
3. 물품의 반송

<u>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 칙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u>	<u>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u>
<u>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u>	<u>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 에 관한 업무</u>
<u>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의 관리·조사 및 화물의 조 사</u>	<u>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u>
<u>7. 관세법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u>	<u>7. 남북교역물품의 반출 관리</u>
<u>8.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u>	<u><삭 제></u>
<u>9.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u>	<u><삭 제></u>
<u>10. 압수물품의 보관·관리</u>	<u><삭 제></u>
<u>11.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조정</u>	<u><삭 제></u>
<u>12.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에 관 한 범칙 수사업무</u>	<u><삭 제></u>
<u>13.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 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공항 ·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 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하 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 총기류·폭발물의 밀수단속</u>	<u><삭 제></u>
<u>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u>	<u><삭 제></u>

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
사업무

1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
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
약」(CITES) 위반사범에 대
한 범칙수사업무

<삭 제>

1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건의 운
용 및 관리

<삭 제>

17.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
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
한 사항

<삭 제>

18. 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
사항

<삭 제>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
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

<삭 제>

㉔ 조사관은 제23항 및 제25항
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
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
사 업무를 분장한다.

㉔ ----- 제26항 및 제28항--

-----.

㉕ (생 략)

㉕ (현행 제25항과 같음)

<신 설>

㉙ 무역안보조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㉔ 조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 제13호 · 제15호 및 제17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2. (생략)

3. 제23항 및 제2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④ (생략)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 · 제7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9항제3호

1.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3.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4. 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 사항

㉕ -----
-----.

1. 제26항제1호 · 제12호 · 제13호 · 제15호 -----

--

2. (현행과 같음)

3. 제26항 · 제28항 및 제29항--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0항 -----

----- 제11항제3호

· 제18호 · 제19호, 같은 조 제1
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 ·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
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
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
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
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
한다.

<신 설>

⑦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
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8항
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
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
항을 분장한다.

⑧ 심사총괄1과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4

· 제18호 · 제19호----- 제13
항 ----- 제14항제1호 ·
제3호-----.

⑥ 수입통관과장-----

-----.

⑦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5
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
외한다)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

----- 제10항
제1호-----

-----.

<삭 제>

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
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
항

⑨ 심사총괄2과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
호 · 제17호 · 제17호의2 및 제
20호의 사항

2. 덤핑거래 심사와 덤핑방지관
세 연례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 설>

⑩ 심사관은 제8항 및 제9항의

⑨ 심사총괄1과장-----

-----.

1.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
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항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
항

⑩ 심사총괄2과장은 제12조제1
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
12호까지, 제16호 · 제17호 · 제1
7호의2, 제20호 및 제21호의 사
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을 분장한다.

2. 삭 제

⑪ ----- 제9항 및 제10항---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⑬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2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⑯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⑰ 조사관은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

⑫ ----- 제12조제22항제1호-----
-----.

⑬ ----- 제12조제22항제12호-----
-----.

⑭ ----- 제12조제23항-----
-----.

⑮ ----- 제12조제24항 -----
-----.

⑯ -----

----- 제12조제21항 -----

-----.

⑰ ----- 제12조제26항-----

-----.

⑱ ----- 제17항-----

-----.

⑲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 사범,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 분석 · 심사 및 수사
2.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 · 분석 · 심사 및 수사
3.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⑲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

1. 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 사범, 조직범죄 및 제12조 제2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 · 분석 · 심사 및 수사
 2.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 · 분석 · 심사 및 수사
 3.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삭 제>

- ⑳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항-----

업무

5. (생략)

㉔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㉕ 외환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5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2조제26항제2호의 사항

3. (생략)

㉖ 외환조사관은 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㉗ 외환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5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2. 3. (생략)

㉘ 외환검사관은 제23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생략)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제7호 및 같은

--

5. (현행과 같음)

㉑ ----- 제12조제30항 -----.

㉒ -----.

1. 제12조제28항제1호 -----

2. 제12조제30항제2호 -----

3. (현행과 같음)

㉓ ----- 제22항 -----.

㉔ -----.

1. 제12조제28항제2호 -----

2. 3. (현행과 같음)

㉕ ----- 제24항 -----.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 3. (생략)

⑤ (생략)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이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통관검사1과장·통관검사2과장 및 통관검사3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설>

<신설>

⑧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제12조제12항 각 호(제2호는

-- 제10항 -----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12조제11항 각 호 ----

-----.

⑦ 수입통관1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9항 제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4항 -----

제외한다)의 사항

3. (생략)

⑨ (생략)

⑩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16항·제18항 및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여행자통관1과장 및 여행자통관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⑬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12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⑭·⑮ (생략)

⑯ 특송통관1과장·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제15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⑰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

3. (현행과 같음)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⑫ -----
----- 제19항·제21항 및 제22항 -----

-----.

⑬ ----- 제12조제24항 -----
-----.

⑭ -----
----- 제12조제13항 -----
-----.

⑮ ----- 제14항 -----

-----.

⑯·⑰ (현행 제14항 및 제15항과 같음)

⑱ -----
----- 제17항 -----

-----.

⑲ -----
----- 제17항제1호 -----

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⑮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

⑯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제28항부터 제30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⑰ 조사관은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건의 운용 및 관리

⑰ 조사관은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⑱ 마약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 략)
3. 제12조제2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⑳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제20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생 략)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생 략)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및

<삭 제>

㉒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26항제4호-----

㉓ -----
---- 제22항 -----

-----.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10항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12조제11항 -----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통관검사1과장·통관검사2과장·통관검사3과장 및 통관검사4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통관검사5과장은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각각 분장한다.

⑧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⑨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⑩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 제14항제2호-----

-----.

⑦ 수입통관1과장 및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⑪ -----
----- 제10항제2호-----
-----.

⑨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각각 분장한다.

⑫ ----- 제12조제13항 -----
-----.

⑬ ----- 제12항-----

사항을 분장한다.

⑪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⑫ 심사관은 제1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
한다.

⑬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
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
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⑭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9
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⑯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
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⑰ 조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
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을 분장한다.

<신 설>

-----.

⑰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
항 -----.

⑱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 제14항-----

---.

⑯ ----- 제12
조제21항 -----

-----.

⑭ 심사총괄과장-----
-----.

⑧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8
항 -----.

⑲ ----- 제12조제26항
----- 제28항 ---
-----.

⑳ ----- 제19항 -----

-----.

㉑ 무역안보조사과장은 제12조
제2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
다.

⑮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생략)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제6항·제8항 및 같은 조 제16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납세지원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6호·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 제20호, 같은 조 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및 같은 조 제18항의 사항을 분

② ----- 제12조제30항
-----.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2조제5항·제6항·제8항·제9항·제10항 -----
제19항제18호-----
--.

⑤ ----- 제12조제19항제1호-----

----- 제21호----- 제22항 및 제24항-----
-----.

⑥ ----- 제12조제19항제1호-----

----- 제21항-----

장한다.

⑦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 · 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 ·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 제1호 ·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생략)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 · 제6항 · 제8항 및 같은 조 제16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제1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18항 각 호, 같은 조 제1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 · 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 · 제

-----.

⑦ ----- 제12조제26항 ·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⑧ ----- 제12조제11항 · 제13항 ----- 제14항 제1호 · 제3호-----.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2조제5항 · 제6항 · 제8항 · 제9항 · 제10항 ----- 제19항제18호-----.

⑤ ----- 제12조제19항 각 호(제18호, 제20호----- 제21항 ----- 제22항 ----- 제24항 -----.

⑥ ----- 제12조제26항 ·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⑦ ----- 제12조제11항 ----- 제13항 ----- 제14항제1호 · 제3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
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
· 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
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
호 · 제3호 · 제4호, 같은 조 제1
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
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
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제6항
및 제8항 각 호-----
제10항 제1호-----

---- 제19항 제18호 -----
제21항 제1호-----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
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생략)

② 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
한다.

④ 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8항제1호
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
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
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
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
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
장한다.

③ ----- 제12조제13항
-----.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6항·제8항
및 제9항 -----.

③ ----- 제14조제17항

-----.

④ ----- 제12조제10항제1호

-- 제11항 ----- 제14항
-----.

⑤ ----- 제12조제19항제1호

호,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

제21항제1호

제22항제1호

제24항

⑥ 제12조제26항제1호

제17호까지 제28항제1호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⑦ 제12조제13항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제6항 및 제8항 각 호 제10항제1호

제19항제18호 제21항제1호

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4호·제15호, 같은 조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같은 조 제11항제14호·제15호,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제12조제11항제1호-----
----- 제13항 ----- 제14항

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제1호·제3호-----
--.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생 략)

제21조(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② (생 략)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제9항 각 호-----
----- 제11항제1호-----

----- 제13항 -----
제14항제1호-----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 제14조제17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마산세관·경남남부세관·포항세관·광양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② (생략)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

제22조(마산세관·경남남부세관
·포항세관·광양세관·목포세
관·여수세관·군산세관의 과
단위 사무분장) ①-----

제14조 제17항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제

6항 및 제8항 각 호-----

-- 제10항제1호

----- 제19항 제18호

----- 제21항제1호

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 · 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6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 제3호 ·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장의2 관세인재개발원
제32조의2(관세인재개발원) 관세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 제3호 ·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제12조제13항 -----.

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2조의2(관세국경인재개발원)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2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인재개발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32조의2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8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6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③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

---.

제32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9명-----

----- 4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

② (현행과 같음)

③ -----

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생략)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②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1명(관세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생략)

④ 세관관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 6급 1명)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

-----(관세주사보 또는 행
정주사보 1명)-----.

③ (현행과 같음)

④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7명 (관세주사 6명, 관세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생략)

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⑦ 관세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3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학예연구사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기후에
너지환경부 -----

-----.

⑦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 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 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관세청과 그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60	363	+3
일반직 계	359	362	+3
서기관	12	13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11	-1
행정사무관	46	47	+1
관세주사	80	81	+1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신설>	1	+1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368		372	+4
일반직 계	.		.		.	
			367		371	+4
서기관	.		.		.	
			12		13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		.	
			13		12	-1
행정사무관	.		.		.	
			47		48	+1
관세주사	.		.		.	
			95		94	-1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		.		.	
			<신설>		2	+2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		.		.	
			<신설>		1	+1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		.		.	
			<신설>		1	+1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신설>	1		+1	
관세주사보			1	<삭제>		-1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4,867	4,902	+35
일반직 계	4,867	4,902	+35
·	·	·	
행정사무관	124	127	+3
·	·	·	
관세주사	777	784	+7
·	·	·	
관세주사보	926	943	+17
·	·	·	
관세서기	1,053	1,060	+7
·	·	·	
관세서기보	741	742	+1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874	4,905	+31
일반직 계	4,874	4,905	+31
행정사무관	139	142	+3
관세주사	858	859	+1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신설>	2	+2
관세주사보	1,024	1,040	+16
관세서기	955	962	+7
관세서기보	651	652	+1
학예연구사	<신설>	1	+1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3]

관세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7항 전단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	(제34조제 7항 전단 관련)	(제34조제 7항 전단 관련)	
•	•	•	
•	•	•	